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54호 2022. 12. 29.(목)

【규 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76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76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25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가정사업계 불연성 폐기물 배출 가능 폐기물 중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폐기물을 삭제하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맞춰 신설된 90L 가정사업계 가연성 폐기물 봉투의 제작사양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사업계 불연성 폐기물 배출 가능 폐기물 개정 (제2조) ○ 125L 가정사업계 가연성 봉투 폐지 및 90L 신설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 변경(별표 1) ○ 일반용, 재사용 및 가정사업계용봉투의 제작사양 변경(별표 2, 별표 4, 별표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6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리·도자기 조각 등[가정사업계폐기물(불연성)]

제3조제2항 중 “전화번호 기타”를 “전화번호,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관련대장”을 “수불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의 방법에 따라”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6 중 “자원순환과”를 각각 “청소행정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수령내역란, 공급내역란 및 잔량란 중 “100L”를 각각 “75L”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5의 종량제 가정사업계 봉투 중 용량 90리터인 봉투의 종류·규격 및 제작사양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량제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종류·규격 및 제작사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중인 125리터 종량제 가정사업계용 봉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제작하고,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및 사용한다.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규격·용도·색상 및 재질(제3조 관련)

1. 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무게제한

종 류		용량 (ℓ)	규격(가로×세로/cm) ¹⁾		무게제한 ²⁾	비 고
			일반형	끈 삽입형		
일반용 봉투		5	26× 46.5	26× 39	—	
		10	33× 56.5	33× 49	—	
			36× 53.5	—	—	재사용 봉투에 한함
		20	42× 69.5	42× 62	—	
			45× 65.3	—	—	재사용 봉투에 한함
		50	56× 91.5	56× 85	13kg 이하	공공용 봉투 포함
		75	65× 103.5	65× 99	19kg 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0	42× 69.5	42× 62	—	
가정사업계용 봉투	가 연 성	30	48× 78.5	48× 73	—	
		60	60× 97.5	60× 90	15kg 이하	
		90	67× 111.7	67× 106	22kg 이하	
	불 연 성	30	48× 78.5	48× 73	25kg 이하	
		60	60× 97.5	60× 90	25kg 이하	

1) 봉투규격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 실제 사용할 종량제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형 봉투 여분의 길이 계산식

-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 끈 삽입형 봉투규격 계산식

- 근거 : 한국플라스틱 표준

- 봉투의 너비 : 기존 봉투 규격기준 적용
- 봉투의 길이 : $[\{\text{반지름}(r) \times \text{반지름}(r) \times \pi\} \div \text{봉투용량}] + \text{지름}(d)$

-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50ℓ 이상 종량제 봉투의 경우 폐기물 배출 밀도를 최대 0.25kg/ℓ로 설정하여 무게제한 값을 산출
다만,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방지를 위해 가정사업계용 봉투(불연성)는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25kg로 설정

2.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재질

구 분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 봉투(가연성)	가정사업계용 봉투(불연성)
색 상	청 색 (투명 또는 옅은 색상)	백 색 (투명 또는 옅은 색상)	녹 색 (투명 또는 옅은 색상)	황 색	회 색
재 질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PP마대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15.5cm

39.0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5ℓ)

--- 일 반 용 ---

1. 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넣어 지정된 날 저녁에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 종량제봉투 배출 시간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일(Sun.)
일몰 후 ~ 다음날 새벽 4시까지 (Sunset ~ 4 a.m.)

2. 이 종량제 봉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폐기물을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활용품은 재활용 배출 요일에 맞춰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에 넣어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 표시

26cm

- ※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 상기 사양은 5ℓ이하 봉투의 표준 사양임

15.5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10ℓ)

--- 일 반 용 ---

1. 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넣어 지정된 날 저녁에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 종량제봉투 배출 시간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일(Sun.)
일몰 후 ~ 다음날 새벽 4시까지 (Sunset ~ 4 a.m.)

2. 이 종량제 봉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폐기물을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활용품은 재활용 배출 요일에 맞춰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에 넣어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 표시

33cm

- ※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 상기 사양은 10ℓ이하 봉투의 표준 사양임

18.4cm

51.1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20ℓ)
Standard Waste Bag

--- 일 반 용(For Household Use) ---

1. 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넣어 지정된 날 저녁에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Put your general waste in this bag, and put it in front of your house (or sto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discharge schedule.)

☞ **종량제봉투 배출 시간 (Waste discharge Schedule)**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일(Sun.)
일몰 후 ~ 다음날 새벽 4시까지 (Sunset ~ 4 a.m.)

2. 이 종량제 봉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his standard waste bag can only be used in Yeonsu-gu, Incheon.)

3. 일반폐기물을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ou will be fined for up to 1 million won for any improper waste disposal, such as failing to use this bag for general waste or not bringing waste out and putting it in front of your house (or store).)

4. 재활용품은 재활용 배출 요일에 맞춰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에 넣어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Put recyclables in a transparent plastic bag, and put it in front of your house (or store) according to the recyclables discharge schedule.)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 표시

42cm

※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20ℓ봉투의 표준 사양임

22.8cm

91.5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50ℓ) Standard Waste Bag

--- 일 반 용(For Household Use) ---

1. 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넣어 지정된 날 저녁에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Put your general waste in this bag, and put it in front of your house (or sto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discharge schedule.)

☞ **종량제봉투 배출 시간 (Waste discharge Schedule)**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일(Sun.)
일몰 후 ~ 다음날 새벽 4시까지 (Sunset ~ 4 a.m.)
무게제한 : 13KG 이하
Standard Waste Bag: Max. Weight-13KG

2. 이 종량제 봉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his standard waste bag can only be used in Yeonsu-gu, Incheon.)

3. 일반폐기물을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ou will be fined for up to 1 million won for any improper waste disposal, such as failing to use this bag for general waste or not bringing waste out and putting it in front of your house (or store).)

4. 재활용품은 재활용 배출 요일에 맞춰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에 넣어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Put recyclables in a transparent plastic bag, and put it in front of your house (or store) according to the recyclables discharge schedule.)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 표시

56cm

※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50ℓ봉투의 표준 사양임

25.7cm

77.8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75ℓ) Standard Waste Bag

--- 일 반 용(For Household Use) ---

1. 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넣어 지정된 날 저녁에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Put your general waste in this bag, and put it in front of your house (or sto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discharge schedule.)

☞ **종량제봉투 배출 시간 (Waste discharge Schedule)**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일(Sun.)
일몰 후 ~ 다음날 새벽 4시까지 (Sunset ~ 4 a.m.)
무게제한 : 19KG 이하
Standard Waste Bag: Max. Weight-19KG

2. 이 종량제 봉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his standard waste bag can only be used in Yeonsu-gu, Incheon.)

3. 일반폐기물을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ou will be fined for up to 1 million won for any improper waste disposal, such as failing to use this bag for general waste or not bringing waste out and putting it in front of your house (or store).)

4. 재활용품은 재활용 배출 요일에 맞춰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에 넣어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Put recyclables in a transparent plastic bag, and put it in front of your house (or store) according to the recyclables discharge schedule.)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 표시

65cm

※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75ℓ봉투의 표준 사양임

재사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로 이용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쓰레기 봉투는 저녁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 종량제봉투 배출 시간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일(Sun.)
일몰 후 ~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종량제 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 표시 및 제작사양

가정사업계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20.3cm 58.2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30ℓ) — 가정사업계용(타는 쓰레기) — 1.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 신고처 : 업 체 명 ☎ ***** 2. 처리 대상 폐기물 -이불,카펫,의류,인형,신발,가방,폐장판,페스티로폼,노끈,페비닐,머리카락 등 타는 쓰레기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표시	24.1cm 73.4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60ℓ) — 가정사업계용(타는 쓰레기) — 1.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 신고처 : 업 체 명 ☎ ***** [무게제한 : 15KG 이하] 2. 처리 대상 폐기물 -이불,카펫,의류,인형,신발,가방,폐장판,페스티로폼,노끈,페비닐,머리카락 등 타는 쓰레기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표시	60cm
-------------------------------------	---	---	-----------------

26.3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90ℓ)

— 가정사업계용(타는 쓰레기) —

1.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 신고처 : 업 체 명 ☎ *****

[무게제한 : 22KG 이하]

84.4cm

2. 처리 대상 폐기물

-이불,카펫,의류,인형,신발,가방,폐장판,페스티로폼,노끈,페비닐,머리카락 등 타는 쓰레기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표시

67cm

73cm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30ℓ) —가정사업계용(타지 않는 쓰레기)— 1.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 신고처 : 업 체 명 ☎ ***** [무게제한 : 25KG 이하] 2. 처리 대상 폐기물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의 건축폐자재 및 유리, 도자기 등과 같은 타지 않는 쓰레기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표시
	48cm

90cm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60ℓ) —가정사업계용(타지 않는 쓰레기)— 1.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 신고처 : 업 체 명 ☎ ***** [무게제한 : 25KG 이하] 2. 처리 대상 폐기물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의 건축폐자재 및 유리, 도자기 등과 같은 타지 않는 쓰레기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표시
	60cm

※ 가정사업계용(불연성): 끈삽입형 P.P마대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 봉투 · 스티커)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영업형태	슈퍼마켓() 아파트관리사무소() 기 타()			
※ 해당란에 ○표하고 기타는 영업형태를 상세히 기재				
점포규모	평		봉투적재창고	평
[점포약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 스티커)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도장				

(종량제 봉투 · 스티커)판매소지정증

① 지 정 번 호 :

② 상 호(명 칭)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성 명(대표자) :

⑤ 생년월일 :

⑥ 사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 스티커)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뒷 면)

변 경 사 항

년 월 일	변 경 내 용	확 인 (인)

◁ 영 업 상 유 의 사 항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종량제 봉투·스티커) 진열장의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3. (종량제 봉투·스티커) 공급을 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공급하려 할 경우(불법 제작·유통 사례 예방)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판매소의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판매소를 지정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				
판매자	상 호		지 정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변 경 사 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판매소(상호·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스티커)판매소 지정증(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 봉투·스티커)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				
판매자	상 호		지 정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폐업(휴업)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라 판매소(폐업·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원본)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		
신고내용	발견일시			
	발견장소			
	행위내용 (구체적으로)			
	행위자 인적사항 (성명 및 주소 또는 차량번호)			
	증거물 목록			
위와 같이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 규정에 <u>의한</u>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 ----- ----- ----- <u>다른</u> ----- ----- -----.
1. 일반폐기물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u>종량제봉투</u> 에 담아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 미관을 위하여 배출일 일몰 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자 집 앞에 배출하되 수거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1. ----- ----- <u>종량제 봉투</u> ----- ----- ----- ----- ----- ----- -----.
2. 가정사업계폐기물(불연성·가연성)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 가정 및 가내수공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청라사업소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이 금지된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2. ----- ----- ----- ----- ----- ----- ----- -----

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가정사업계용봉투(불연성·가
연성)에 담아 수거·운반 처
리대행업체에 배출 일시, 장
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유리·형광등·도자기 조
각 등과 소각재, 광재, 분
진, 오니 등[가정사업계폐
기물(불연성)]

다. (생략)

3.·4. (생략)

제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
작할 때에는 봉투 전면에 인천
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 용량, 용
도, 주의사항, 구 명칭 및 연락
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스티커에는 구의 문
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
리업체 전화번호 기타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현행과 같음)

나. 유리·도자기 조각 등[가
정사업계폐기물(불연성)]

다.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제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화
번호, 그 밖의 -----
-----.

③ ~ ⑤ (생 략) 제5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1.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u>기타</u> 이에 준하는 업소 2. ~ 4. (생 략) 제9조(관련대장의 관리) 구청장은 스티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u>의한</u> 관련 대장을 각 스티커 판매소에 비치하여 작성토록 하고,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동장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u>의한</u> <u>관련대장</u>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폐기물의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 <u>그 밖</u> <u>에</u> -----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관련대장의 관리) ----- ----- ----- <u>따른</u> ----- ----- ----- <u>따른</u> <u>수불대장</u>-----. 제11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
---	---

무단투기 등의 신고자는 사진·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
한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화 등 기타의 방법에 따라 신
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
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무단투기 등의 신고 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따른 -----
----- 그 밖의 방
법으로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따
른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당직수당 및 대체휴무 사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당직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에 단서 조항 신설(제3조) ○ 당직수당 “50,000원” → “60,000원” 상향(제5조) ○ 대체휴무 사용기간 “5일” → “10일” 확대(제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68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직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재택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

급한다.

제6조 단서 중 “5일” 을 “10일”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3조(적용범위) ----- ----- ----- ----- . 다만, 당직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생략)	제2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5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재택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의 휴무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 ----- ----- . ----- ----- ----- 10일 ----- ----- .